

국립고궁박물관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국립고궁박물관장

□ 최종 합격자 명단

응시분야(근무형태)	고용형태	응시번호	합격자
행정	청년인턴	10	현○○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퇴직 발생 시 예비 합격자를 선발 함.

□ 임용일

○ 임용일: 2023. 7. 1.(토)

*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 제출기한: 2023. 6. 30.(금)

○ 제출장소: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 제출서류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서식 1)

- 반명함 사진 이미지 파일(jpg) * 이미지 파일이 없는 경우 사진 3매 제출

□ 공지사항

-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3701-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3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3>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방문, 팩스(02-732-0775)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10월 30일까지 보관하게 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2.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서식 1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